

1. 개정이유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됨에 따라, 위탁 범위 등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진항목 조정 및 문진표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 1) 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 결과통보 및 전자적 시스템 연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 위탁금 관리, 비용 환수결정 등 학생 건강검진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 위탁
- 2)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추가 업무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단이 위탁 계약서 작성

나.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절차 등(안 제5조의2)

- 1)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받은 공단은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
- 2) 학교의 장은 당해 년도 검진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공단에 제공

- 3)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능
- 4) 학생 건강검진 비용 중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의 52.1%에서 70%로 조정·적용

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조정(안 별표1)

- 1)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혈액지표 검사를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2)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실시하던 결핵 검사(흉부 X-선 촬영)를 검진 의사의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
- 3)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 등을 위하여 전체 검진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 의사에 의한 교육·상담항목 추가

라. 문진표 및 검진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 1)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 선별을 위한 문진항목 추가
- 2) 기존 질병 유무 관찰을 위한 문진 항목을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 파악 등 검진 목적에 맞춰 보완
- 3) 검진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하기 위하여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연락처, 주소(전자우편 포함) 항목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6. ~ 7.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를 “교육부장관이 위탁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이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를 “검진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업무위탁의 범위)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결과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
3. 건강검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 예탁금 관리
4. 건강검진 기관의 건강검진비용 환수결정과 지급될 비용에서 상계하는 업무
5. 건강검진 결과 통보(연계) 및 검진결과 자료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생 건강검진 결과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이 경우 「통계법」을 준용한다.)

7. 학생 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 건강검진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 중 “콧병·목병·피부병”을 “콧·목·피부질환”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받은 공단은 학생 건강검진실시계획을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진실시계획 수립 전까지 당해년도 건강검진 실시 대상 학생 명단 등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를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을 “소재한(읍·면·동을 말한다)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0일”을 “15일”로, “통보”를 “통보하고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진결과를 통보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검진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9항(중전의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초진 진찰료의 70%를 적용한다.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본문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 학년,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제1호가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귓병”을 “귀질환”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코병”을 “코질환”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목병”을 “목질환”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피부병”을 “피부질환”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건강교육 및 상담

별표 2 제10호의 검진방법(세부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력, 올바른 자세, 식습관, 신체활동, 흡연·음주, 유해약물 등에 대해 실시

별표 2 제1호가목 중 “비만”을 “비만 및 과체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학년 학생”을 “1학년 학생 중 의사가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시행 중인 학생 건강검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또는 전자우편		수령방법	☐ 우편 ☐ 전자우편 ☐ 모바일		

이 문진은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1-2. 복용중인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2.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3.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4. 생활 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기록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신체활동	평소 1주일간,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예 : 달리기, 축구, 농구, 빠른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	()일	
	평소 1주일간, 하루에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몇 시간씩 하십니까?	()시간 ()분	
	평소 1주일간,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일	
	평소 1주일간, 근육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철봉, 아령, 평행봉 등)	()일	
식습관	평소 1주일간, 아침 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밥, 빵,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 포함)	()일	
	평소 1주일간,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에너지음료, 커피, 커피음료 등)	()번	
	평소 1주일간, 단맛이 나는 음료는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즙음료, 커피음료 등)	()번	
	평소 1주일간, 식사할 때 채소를 몇 번 정도 먹었습니까? (채소 반찬, 샐러드, 김치 등)	()번	
체중변화 및 수면	최근 체중변화가 있었습니까? ※ 많이 늘었음(1), 약간 늘었음(2), 없었음(3), 약간 줄었음(4), 매우 줄었음(5)	()번	
	최근 30일 동안 체중관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밖의 증상	이전 건강검진 시 안과 진료를 권유받아 안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부모나 형제 등) 중 어려서부터 청력저하(난청)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또는 전자우편		수령방법	☐ 우편 ☐ 전자우편 ☐ 모바일		

이 문진은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1-2. 복용중인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2.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3.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4. 결핵 감염 의심 여부와 생활 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기록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결핵	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최근 2년간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치료받지 않은 기관지 또는 폐결핵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다음과 같은 증상 중 어떤 것이 있습니까?		
	·3주 이상 지속된 설명할 수 없는 기침이 있나요?		
	·3주 이상 지속된 설명할 수 없는 열이 있나요?		
	·야간 땀 (침대 시트를 젖게 만드는 땀)이 있나요?		
	·호흡 곤란이 있나요?		
	·흉통이 있나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나요?		
신체활동	평소 1주일간,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예 : 달리기, 축구, 농구, 빠른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	()일	
	평소 1주일간, 하루에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몇 시간씩 하십니까?	()시간 ()분	
	평소 1주일간,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일	
	평소 1주일간, 근육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철봉, 아령, 평행봉 등)	()일	
식습관	평소 1주일간, 아침 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밥, 빵,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 포함)	()일	
	평소 1주일간,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에너지음료, 커피, 커피음료 등)	()번	
	평소 1주일간, 단맛이 나는 음료는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번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즙음료, 커피음료 등)	
	평소 1주일간, 식사할 때 채소를 몇 번 정도 먹었습니까? (채소 반찬, 샐러드, 김치 등)	()번
체중변화 및 수면	최근 체중변화가 있었습니까? ※ 많이 늘었음(1), 약간 늘었음(2), 없었음(3), 약간 줄었음(4), 매우 줄었음(5)	()번
	최근 30일 동안 체중관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해 약물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반담배(궐련)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평소 1주일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일
그 밖의 증상	이전 건강검진 시 안과 진료를 권유받아 안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부모나 형제 등) 중 어려서부터 청력저하(난청)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210mm×297mm(백상지 80g/㎡)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또는 전자우편		수령방법	☐ 우편 ☐ 전자우편 ☐ 모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3. 최근 3개월간, 치아가 쏘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4. 최근 3개월간,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최근 3개월간,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 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학생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건강검진 종합소견

교육 상담내용

항목별 검진 결과

구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결과 (참고치)			
계 측 검 사	신체 발달	키 및 몸무게	(cm) /		(kg)	
	비만·저체중 /복부비만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 저체중 (5미만)	☐ 정상 (5이상 85 미만)	☐ 과체중 (85 이상 95 미만)	☐ 비만 (95이상)
		허리둘레(cm)				
	시각이상	시력(좌우)	/	☐ 교정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한쪽눈이라도 나안시력 0.7 이하)
		안 질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이상소견 1개 이상)	
	청각이상	청력(좌우)	/	☐ 교정	☐ 정상	☐ 정밀검사 요함(40dB 이상)

		귀 질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이상소견 1개 이상)	
	고혈압 (수축기/이완기)	/ mmHg	☐ 정상 ☐ 경계(성별, 연령별, 신장 대비 90~95백분위수 또는 90 백분위수 미만이라도 130/80mmHg 이상인 경우 포함) ☐ 정밀검사 요함(성별, 연령별, 신장 대비 95백분위수 초과)		
시 진 검 사	척추측만증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코 질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목 질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피부 질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소변 검 사	요단백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요잠혈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혈 액 검 사	당뇨병	공복혈당(mg/dL)		100 미만	☐ 정상 ☐ 정상(경계) ☐ 정밀검사 요함(126 이상)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mg/dL)		170 미만	☐ 정상 ☐ 정상(경계) ☐ 정밀검사 요함(200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mg/dL)		45 이상	☐ 정상 ☐ 정상(경계) ☐ 정밀검사 요함(40 미만)
		중성지방(mg/dL)		90 미만	☐ 정상 ☐ 정상(경계) ☐ 정밀검사 요함(130 이상)
		저밀도 콜레스테롤(mg/dL)		110 미만	☐ 정상 ☐ 정상(경계) ☐ 정밀검사 요함(130 이상)
	간 질환	에이에스티(AST)(IU/L)		10세 미만 55 이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55 초과)
				10세 이상 45 이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45 초과)
		에이엘티(ALT)(IU/L)		45 이하	☐ 정상 ☐ 정밀검사 요함(45 초과)
빈혈 등	혈색소(g/dL)		12 이상	☐ 정상 ☐ 정밀검사 요함(12 미만)	
영상 검 사	흉부촬영	☐ 정상 ☐ 정밀검사 요함			
진찰 (문진)	과거병력		약물치료		
	생활습관	☐ 식습관 개선 필요 ☐ 신체활동 개선 필요 ☐ 건강체중 관리 필요 ☐ 근력운동 필요 *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검진일:	검진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검진 의사: 면허(자격)/번호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생략)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 ----- ----- <u>교육부장관이 위탁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이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조의2(업무위탁의 범위) ① <u>법제7조제8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1. <u>건강검진 결과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2. <u>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u>
	3. <u>건강검진 비용의 청구·심사·</u>

	<u>지급 등 예탁금 관리</u> <u>4. 건강검진 기관의 건강검진비용 환수결정과 지급될 비용에</u> <u>서 상계하는 업무</u> <u>5. 건강검진 결과 통보(연계) 및</u> <u>검진결과 자료 활용 등에 관</u> <u>한 사항</u> <u>6. 학생 건강검진 결과 통계 작</u> <u>성에 관한 사항(이 경우 「통</u> <u>계법」을 준용한다.)</u> <u>7. 학생 건강검진 인력의 교육</u> <u>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u> <u>8. 기타 교육부장관이 공단에</u> <u>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u> <u>하다고 정하는 업무</u> <u>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u> <u>학생 건강검진 위탁 실시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u> <u>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을</u> <u>준용한다.</u>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코 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 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 단해야 한다.	①----- 코 · 목·피부질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받은 공단은 학생 건강검진실시계획을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 수립 전까지 당해 년도 건강검진 실시 대상 학생 명단 등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음 -----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규정

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3. (생략)

⑤·⑥ (생략)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
----.

1. ---- 소재한(읍·면·동을 말한다) 지역-----

2.·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15

일 -----
----- 통
보하고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 이 경우 공단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진결과를 통보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⑧ 검진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⑨ -----

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u><단서 신설></u>	----- ----- ----- --. <u>단,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초진 진찰료의 70%를 적용한다.</u>
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u>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u> 1. <u>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u> 2. <u>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u> 3. <u>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	제6조(별도의 검사) ①----- ----- -----<u>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대상 학년,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